#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72 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주호영·고동진·강대식

권영세 · 서명옥 · 조은희

박상웅 • 박준태 • 김장겸

조지연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,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).

법률 제 호

#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6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호의4 각목 외의 부분 중 "성폭력범죄 또는"을 "성폭력범죄,"로, "성범죄를"을 "성범죄 또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를"로 한다.

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용결격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6호의3라목 및 제6호의4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·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33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	
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	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	6의3
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	
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	
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	
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	
사람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
	률」에 따른 죄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	6의4
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	
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<u>성폭</u>	<u>성폭</u>
<u>력범죄 또는</u> 「아동·청소년	럭범죄,
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	
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	
대상 <u>성범죄를</u> 범한 사람으로	<u>성범죄 또는 「마약류 관</u>
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	<u> </u>
지 아니한 사람	

가. ~ 마. (생 략) 7.·8. (생 략)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7.·8. (현행과 같음)